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8월 24일
2. 제 출 자: 구 미 시 장
3. 회부일자: 2026년 8월 25일
4. 상정일자: 2026년 9월 2일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II.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경제국장 김 영 철

2. 제안이유

가.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은 창업기업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기존 창업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다)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 제15조

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 필요성: 기업 발굴, 선정, 사업관리, 컨설팅,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 사무 내용: 구미시 스타트업 제작센터 운영사업 업무 전반

1) 사업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창업기업 발굴 및 장비 활용 기술지원

3) 제품 설계, 디자인, 가공 등 지원

4) 선정기업 및 사업성과의 DB 구축·관리 등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2027. 1.~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300백만원(시비)

(단위: 백만원)

계	사업비	간접비	인건비	비고
300	210	30	60	

사.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6.8.18.)

아. 위탁구분: 재계약 (수탁기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자. 부서의견: 창업기업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구미시 중소기업창업 지원 조례」 제15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편성 예정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라. 성과보고서 및 성과평가 결과, 감사결과: 안전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동의안은

- 창업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제작센터의 운영 및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사업은 기업 발굴부터 제품 설계, 디자인, 가공 등 장비 활용 및 기술 지원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노하우가 요구되는 만큼, 관련 장비와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집행기관에서는 제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창업 기업이 혁신 기술을 신속하게 상용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판이 되도록 지원하고, 가시적인 기술 사업화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V. 토론요지: 생략

VI. 소수의견의요지: 없음

VII. 심사결과: 원안가결